

## 조합원 가입 신청서 (자연인용)

- 주) 1.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지원부, 자경증명서, 축산업등록증 사본, 인삼경작 확인서 등 첨부  
 2. 자격확인은 사업장 소재지 영농회장, 축산계장, 작목반장, 농지위원, 리·동장 등에게  
 받음. 다만, 농업인 확인서류 및 협지실태조사 결과 농업인임을 확인한 경우 생략 가능

# 조합원가입에 따른 출자금 핵심설명서

## 설명내용

확인

- ①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.
- ② 농축협의 자본금이 납입출자액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을 감액하여 환급합니다.[농협법 제 32조, 제107조, 제112조]
- ③ 출자금은 조합원이 탈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분 전부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으며, 일부 금액을 분할 환급할 수 없습니다.  
[농협법 제31조, 제107조, 제112조, 정관 제13조]
- ④ 조합원의 탈퇴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, 출자금 환급은 농축협의 당해연도 운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결산총회 승인일(의회계연도)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.  
[농협법 제31조, 제107조, 제112조, 정관 제13조]
- ⑤ 배당금은 매회계연도 결산총회 후 농축협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률이 다르게 결정되며, 회계연도 중 탈퇴시 이용고배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 
[정관 제148조제1항, (품목농축협 정관 제146조제1항)]
- ⑥ 출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.  
[농협법 제21조, 제107조, 제112조, 정관 제13조]
- ⑦ 주소, 전화번호 등 조합원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 변경 및 조합원 자격 변경, 상실 시에는 즉시 농축협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⑧ 사업미이용 및 의무불이행 등의 경우 총회의결을 거쳐 제명 될 수 있습니다.  
[농협법 제30조, 제107조, 제112조, 정관 제12조]
- ⑨ 조합원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가 제한됩니다.  
[조세특례제한법 제 129조의2, 제88조의5]

## 고객설명확인

위 설명내용을 잘 들었고, 농축협 출자금은 (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),  
농축협이 자본잠식 될 경우에는 (감액된 출자금)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,  
환급청구는 (탈퇴 다음 회계연도 결산총회 승인일)부터 청구할 수 있음을  
잘 이해하였습니다.

(인, 서명)

## 담당직원확인

산청군농업협동조합 ( )은(는) 위 내용에 대하여 고객 ( )에게  
설명하였습니다.

(인, 서명)

※ 원본은 농축협 보관, 사본은 가입신청자에게 교부